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무상수출 확인자를 추가하고,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 적용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     의 :

라. 기      타 :

##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주무부장관”을 “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호 중 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”를 “법 제3조제1항제2호를 대상으로 한 실적은 포함하지 아니하고,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”로, “6억원”을 “8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괄호 중 “포함한다”를 “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를 대상으로 환급신청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”로, “6억원”을 “8억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급대상 수출 및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)  
제2조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        행	개        정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환급대상 수출등) ① 「수출 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 라 한다) 제4조제1호 단서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 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.</p> <p>1. (생  략)</p> <p>2. 해외에서 투자·건설·용역 · 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(법인을 포함 한다)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·시설 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 용하는 물품으로서 <u>주무부장 관이</u>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 인한 물품의 수출</p> <p>3. ~ 6. (생  략)</p> <p>② ~ ④ (생  략)</p> <p>제12조(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대상)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”란</p>	<p>제2조(환급대상 수출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무부장관</u> <u>또는 주무부장관</u>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대상) ----- -----</p>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(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실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6억원 이하일 것

2.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(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)이 6억원 이하일 것

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.

1. -----  
 -----  
 --법 제3조제1항제2호를 대상으로 한 실적은 포함하지 아니하고,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----- 8억원 -----

2.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를 대상으로 환급신청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-- 8억원 --  
 -----